

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

(의안번호 제482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8. 6.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6. 13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6. 13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6. 19

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정이유

- 적의 침투·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단위의 방위요소를 통합·운영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의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가. 통합방위협의회의의 심의사항중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함.(안 제2조)

- 취약지역 대비책
- 통제구역 설정
-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

나.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(안 제3조)

-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.

다. 통합방위협의회의의 운영(안 제4조)

- 통합방위협의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- 통합방위협의회의의 업무를 효율적 처리를 위해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되,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이 정하도록 함.

라.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(안 제6조)

-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,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함.

마.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(안 제7조)

-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등 일반적인 대비책 규정
- 개활지에 대한 장애물 설치사항 및 호수에 대한 대비책 규정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경상남도 총무 33820-10029('98.3.7) 관련호의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표준안 준칙 및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것으로
- 적의 침투,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지역의 안정과 지역의 총력적 방어태세를 구축키 위해서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기존 방위협의회의 40인 구성인원이 20인으로 감소한 사유는
- 답 : 통합방위법 및 경상남도표준안 지침에 의함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8. 6. 1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